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3729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은 2026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II.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 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등 조정으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2026년 수입·지출계획이 변경됨
-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2026년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4,606백만원에서 4,740백만원으로 134백만원 증가함
- 나. 서울광역자활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과년도 실집행잔액(발생이자), 지역 자활자금 반납처리 관련 내일키움수익금 환수금 및 지역자활자금의 1회 이월 사용 후 발생한 잔액 등 반영으로 「기타수입」 금액이 당초 154백

만원에서 368백만원으로 214백만원 증가 및 융자금융금 회수수입계획 변경에 따른 「융자금회수(이자포함)」 금액이 당초 150백만원에서 140백만원으로 10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 추가 수요 재조사 결과 「민간융자금」 지출금액이 당초 430백만원에서 714백만원으로 284백만원이 증가함

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예치금」금액이 당초 4,225백만원에서 4,279백만원으로 54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 수요 재조사 결과 변동분 반영으로 정책사업비가 당초 998백만원에서 1,282백만원으로 284백만원 증가하여 28.5% 변경되었음

라.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초 (A)	변경 (B)	증감 (C=B-A)	증감률 (C/A)
계	5,228	5,566	338	6.5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50	140	△10	△6.7
이자수입	318	318	0	0
기타수입	154	368	214	139.0
예치금회수	4,606	4,740	134	2.9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초 (A)	변경 (B)	증감 (C=B-A)	증감률 (C/A)
계	5,228	5,566	338	6.5
소 계	998	1,282	284	28.5
정책사업비				
비 용 자 업	568	568	0	0
융 자 성 업	430	714	284	66.0
행정운영경비				
기 경 본 비	5	5	0	0
재무활동비				
예 치 금	4,225	4,279	54	1.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의견¹⁾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계획중 '2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예치금 회수**가 1억 3,400만원 증가하고, 서울광역자활사업 정산 등에 따른 **기타 수입**(2억 1,400만원 증가)과 용자금융원금 회수 수입계획 변경에 따라 **용자 금융원금수입**(△1,000만원 감소)이 증·감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도 ①**여유자금예치**를 5,400만원 증액하고, ①**다른 정책사업인 저소득시민 자활지원**을 2억 8,400만원 증액하여 지출 계획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²⁾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1)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지출계획중 ①정책사업인 **일반예산(재무활동)**의 경우, 당초 지출계획(42억 2,500만원)보다 1.3%, 5,4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 ②다른 정책사업인 **저소득시민 자활지원**의 경우, 당초 지출계획(9억 9,800만원)보다 28.5%, 2억 8,400만원³⁾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2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일부 정책사업을 증액 조정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에 대한 수·지 균형을 일치시키고자 동 계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요청한 것으로
-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명시된 동 계정의 용도⁴⁾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

3)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2억 8,4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함

4)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제7조(자활계정)

② 자활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 차액의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에서 대여받는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0.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찬회 등 사업 지원
12.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3. 저소득 시민 자활사업 관련 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14.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시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해당 연도 기금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 범위로 한정한다)

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⁵⁾에 따라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을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구분하여 제출한 것이나,
 - 정책사업인 **저소득시민 자활지원**의 하위 세부사업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임에도 **융자성 사업**으로 포괄하여 지출액과 증액규모, 증감률을 기재하여 제출한 바,
 -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지출계획을 변경하려는 정책사업뿐만 아니라 세부사업 또한 각각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 의회의 의안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5. 7, p.309~313